

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 안내

1 법무사관후보생 개요

- ❖ 군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장교에 복무할 사람을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미리 후보생으로 선발·관리한 후 법무장교로 임용하는 제도
 - ※ 법무장교 충원 후 나머지 자원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

□ 지원자격

- 병역판정검사대상 및 현역병 입영□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(신체등급 1~4급)
-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
 - * 28세 이하자(96.1.1. 이후 출생자)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
-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의 장교 임용결격사유 해당자는 지원 불가
 - * 장교 임용결격 : 금고 이상의 형, 복수국적자, 파산선고자 등

2 지원서 제출 및 처리

1. 지원자(병역의무자) ⇒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에게 제출

□ 제출서류

- △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(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), 신원진술서(A),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(A), 기본증명서(상세), 신용정보조회서
 - * 기본증명서(상세) :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(efamily.scourt.go.kr)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
 - *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 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
※ 서식 및 안내문은 병무청 누리집(병무소식 → 공지사항) 참고

선발인원 대비 지원인원 초과하는 경우 추후 '법학적성시험 성적 및 1학년 성적' 추가 제출

□ 제출서류 작성 시 유의 사항

△ 현역 □ 공중보건기사 등 복무지원서

- 학력사항 : 소재지는 시 □ 도 및 시 □ 군 □ 구 표기
- 지원사항 : 법무사관후보생란에만 체크
- 서명 날인 및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에도 서명 필수

△ 개인정보 수집 □ 이용 □ 제공 동의서(A)

- 각 동의란에 빠짐없이 전부 기재, 반드시 성명 기재, 서명날인

※ 지원서, 신원진술서, 동의서 작성 시 서명을 포함한 기재사항 누락없이 작성

2. 법학전문대학원의 장⇒이음(eum)포탈 지원 접수(등록) 후 지원서류 우편 제출

① 병무청유관기관홈페이지(이음포탈, <http://e4c.mma.go.kr>) 지원 접수

△ 접수기간 : '24. 3. 11. ~ 3. 31.

△ 지원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입력하고 이상 여부 재확인

△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

- 사전에 병무청 시스템 담당자 사항 등록되어야 로그인 가능(접수 기간 이전에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 및 등록 요청)

* 접수기간 이전에 수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'병무행정 정보체계사용 (변경 □ 취소)신청서' 접수, 유관기관 사용자로 등록되어야 접수 가능

☞ 접수 경로

이음포탈(<http://e4c.mma.go.kr>) ⇒ 장교후보생지원자등록 ⇒ 법무사관후보생

② 문서 제출(전자문서)

△ 기 간 : '24. 4. 3.(수) 까지

△ 붙임 서류 : 2024년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명단(excel)

※ 3.31.까지 이음포탈에 지원 접수(등록)된 인원에 한하여 명단 작성하여 문서 제출

③ 지원서류 제출(우편 접수)

△ 제출기간 : '24. 4. 3.(수) 까지

※ 3.31.까지 이음포탈에 지원 접수(등록)된 인원내 한하여 지원서류 우편 제출

△ 지원자 명단(성명 가나다 순 - 주민등록번호순) 순으로 개인별 '클립' 편철

※ 지원서류 개인별 순서

① 현역공중보건의사등복무지원서(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), ② 신원진술서(A)

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(A) ④ 기본증명서(상세)

⑤ 신용정보조회서

* 신용정보조회서 발급기관 참조 : 한국신용정보원(www.kcredit.or.kr.)
(경로)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발급 → 내 신용정보열람(크레딧포유)

△ 우편 주소 【우편번호 35208】

-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(둔산동) 정부대전청사
병무청 현역기획과 법무사관후보생 담당

3 지원자에 대한 안내사항

□ 다음의 경우에는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서 제적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,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

△「병역법 시행령」제120조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

- 퇴교 또는 제적된 경우
- 제한연령(30세)까지 정해진 과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
- 정해진 과정을 마치고 30세까지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
- 본인이 법무사관후보생 신분의 포기를 원한 경우

△「군인사법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 사유 해당자

□ 법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 : 수료 후 30세까지 자격 취득자

△ 국방부 역종분류 계획에 따라 현역 법무장교 선발□입영

△ 현역장교 선발자 이외의 사람은 공익법무관으로 입영